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1월 0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박**	박** 1977-02-22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, 000동 000호 (연희동, 중흥5클래스아파트)	무단전출
박**	이** 1980-05-0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"	무단전출
박**	박** 2013-11-04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"	무단전출
박**	이** 2003-10-07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"	무단전출
박**	이** 2005-01-29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"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강 다은 문의전화 : 032-560-4618)

2014년 12월 31일

청라1동장 인

